

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7. 08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변경안에 대하여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임.

2. 주요내용

□ 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의 주요 내용은

취득이 총 5건 22,178㎡ 848,589천원이고

처분이 총 2건 28,061㎡ 238,116천원으로 그 상세내역은,

가. 토지매입

- 진부면사무소 청사 주차장 확장 부지, 하진부리 251-13 외 4필 2,750㎡
- 평창 종부리 군유재산집단화 부지, 종부리 508-44 외 8필 12,924㎡
- 오대산 공예전시체험관 진·출입로 부지, 송정리 1306-2 1,004㎡
-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부지, 재산리 1443 외 1필 1,800㎡

나. 토지매각

- 봉평중·고등학교 이전 부지, 창동리 332 외 7필 25,966㎡

다. 교환 취득·처분

- 대화위생매립장 진·출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으로
 - 대화리 736번지 1필 3,700m²를 취득하고,
 - 대화리 446-1번지 외 1필 2,095m²를 처분하려는 것임.

3. 첨부자료 및 참고사항

- 가. 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
- 나. 예산조치사항 -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확보
- 다. 공유재산특별회계 운용계획안
- 라. 관계법령

관 계 법 령 발 취

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예정가격에 있어서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취득 또는 처분 시 1건당 5억원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「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“개별공시지가”라 한다)로 하고,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.

2. 토지에 있어서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취득은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, 처분은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